

의안번호	제 137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4월 일 (제299회)

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노 광 기 의원
발의연월일	2011년 3월 31일

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1년 3월 31일

발의자 : 노광기 의원(대표발의)

김도경, 김광수, 심기보,
손문규, 장선배, 최미애

1. 개정이유

- 조례제정 이후 불 부합한 조문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면서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이해하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 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위원 중 임명공무원 규정(관계공무원 → 보건복지국장)(안 제2조)
- 위원회 위촉 위원 임기 조정(4년 → 2년)(안 제4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 - 조례 문장의 명사구 등 띄어 쓰기, 쉽고 간결한 문장
 - 명확한 문장,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어투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개정 전문 : 불 임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임
- 관련부서 협의 :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협의
- 관계법령 발취 : 불 임
- 예산수반(비용추계서)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구성” 을 “위원회 구성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 1. 지역주민
 2.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의 임직원
 3.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
 4. 보건복지국장

제3조의 제목 “기능” 을 “위원회 기능” 으로, 같은 조 중 “각호” 를 “각 호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4조(위원 임기) ①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- ③ 제6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위원의 해촉” 을 “위원 해촉” 으로, 같은 조 중 “각호의 1의” 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 로, 같은 조 제1호 중 “타 시·도 관내로 이주한 때” 를 “다른

시·도 관내로 이주한 경우” 로, 같은 조 제2호 중 “품위손상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” 를 “품위 손상 등 적당하지 않다고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의” 을 “그 밖의” 으로 한다.

제7조 제3항 중 “재적의원” 을 “재적위원” 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의견청취등” 을 “의견청취 등” 으로, 같은 조 중 “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” 을 “필요하다고 인정하면” 으로 한다.

제9조 제1항 중 “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” 을 “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건정책팀장” 을 “보건정책담당사무관” 으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수당 등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 을 “시행에 필요한” 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개정 조례에도 불구하고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.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- 3. (생략)</p> <p>4. <u>관계공무원</u></p>	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-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보건복지국장</u></p>
<p>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.</p> <p>1. -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제3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<u>각 호</u>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.</p> <p>1. -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임기) ① <u>당연직공무원인</u> <u>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,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</u></p> <p>② <u>제6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</u> <u>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</u></p>	<p>제4조(위원 임기) ① <u>공무원이</u> <u>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<u>위원 중 위촉</u>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제6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</u> <u>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
<p>제6조(위원의 해촉) <u>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</u> <u>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 시·도 관내로 이주한 때</u></p> <p>2. <u>위원의 품위손상등</u> <u>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</u></p> <p>3. <u>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</u></p>	<p>제6조(위원 해촉) <u>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<u>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</u> <u>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다른 시·도 관내로 이주한 경우</u></p> <p>2. <u>위원의 품위 손상 등</u> <u>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</u></p> <p>3. <u>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</u></p>
<p>제7조(회의) ① - ② (생략)</p> <p>③ <u>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</u> <u>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</u> <u>의결한다.</u>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7조(회의) ① -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</u> <u>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</u> <u>의결한다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의견청취등) <u>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</u> <u>관련기관·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</u> <u>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8조(의견청취 등) <u>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</u> <u>관련기관·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</u> <u>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.</p> <p>②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정책팀장이 된다.</p>	<p>제9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</p> <p>②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정책담당사무관이 된다.</p>
<p>제10조(수당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10조(수당 등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역보건법

제3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은 지역주민, 보건의료관련기관·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·군·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·군·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·군·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·도지사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, 지역주민, 보건의료관련기관·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·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·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2.29, 2010.1.18>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(이하 "지역보건의료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·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·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<개정 2008.2.29, 2010.1.18>

□ 지역보건법시행령

제2조(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등) ① 지역보건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 2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3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
 4. 기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.
1. 지역주민
 2. 보건의료관련기관·단체의 임직원
 3. 보건의료관련전문가
 4. 관계공무원
-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